

육아휴직제도 개선 FAQ

1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아래 추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이용 대상 : 임신중이거나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 추가 조건

1.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사별, 이혼 등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3. 중증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2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하기 위해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 육아휴직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외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발급)
한부모 가정*	배우자 사별,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용)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6개월 이상 근로능력 상실 추가 증빙)
	배우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 또는 병역복무 중인 경우	배우자 수용증명서 또는 복무(병역)확인서
	미혼자인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실종신고서
	배우자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직원이 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	입소확인서
자녀가 중증장애 아동인 경우		자녀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 포털, 장애인고용공단 등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정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대상)은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증빙가능

3 이미 육아휴직 2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추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미 2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추가 조건(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FAQ

4 미사용한 기간의 2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도 연장되나요?

기본 2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할 수 있으나,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AA-2411-0361508 (2025.01.16))

5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년 6개월을 한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네 육아휴직 사용가능한 대상자이면서 추가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는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 개발 완료('25년 4월말) 전까지 2년은 시스템에서, 6개월은 인사운영팀에 별도 신청 (인사운영팀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6 추가 6개월 사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 이를 증빙해야 하나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2년 초과하여 신청하는 시점에 증빙해야 합니다.

7 '25년부터 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차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25년부터 회사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금번 개정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2년차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현행 유지)

8 추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 사용 가능한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육아휴직 추가 사용 대상자가 육아휴직 2년 6개월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 1년차 정부지원, 추가 6개월 정부지원, 2년차 회사지원

구분	육아휴직(유급)	육아휴직(무급)	육아휴직(추가)
기간	1년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정부지원	회사지원 (2년차 限)	정부지원

※ 정부 지원금은 직원 개인이 신청 해야 하며, 신청가능 기간 등 개별적 확인 필요

육아휴직제도 개선 FAQ

(예) '25.03.07 이후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2년 6개월인 경우



- 1년차(① + ②) 휴직급여 : 정부지원
- 2년차(③ + ④) 휴직급여 : 회사지원
- 추가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 : 정부지원, 단 ③ ~ ⑤ 기간내 신청 가능
(정부 지원 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必)

※ 정부 지원금은 직원 개인이 신청 해야 하며, 신청가능 기간 등 개별적 확인 필요

9 그렇다면 '육아휴직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2년 6개월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가 6개월에 대한 정부지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2년 6개월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2년차(13개월) 부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2년차(13개월)부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